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여 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및 제15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

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혁신조직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하고,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정부혁신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3호부터 제5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 중 “디지털정부국장 및 공공데이터정책관”을 “디지털정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정부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42호부터 제69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분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지역혁신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으로 하고, 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지역혁신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치분권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7호부터 제33호까지, 제33호의2,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제37호의2 및 제38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혁신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69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세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경제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40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안전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생활안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제30호·제32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예방안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39호부터 제5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9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0항)

제14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으로 하고,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재난대응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18호·제19호·제2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난복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34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4까지,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협력정책관·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0항)제1호 중 “(公同溝)”를 “(共同溝)”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으로 하고,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협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0조제1항 중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민방위심의관”을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고,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8조제5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교육훈련계획 총괄·조정
3. 교육과정·교육훈련기법 등 연구·개발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6. 서무·보안·비상계획 수립 및 관인·문서 관리
7.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예산·회계·결산 및 재산·물품 관리
9.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
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

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실습기자재 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
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
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

9.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49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부터 제4항 단서까지 및 제6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

지 아니하는”을 각각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각각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를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시스템개발과장”을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각각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를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총괄기획과·재정정보화사업과·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지방세정보화사

업과 및 인프라구축과를 두되, 총괄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및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 및 인프라구축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과세자료시스템 운영·관리

6.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시행

6.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시행

④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온라인 대금 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 총괄 관리

5. 지방재정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시행

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과 유관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금포털 구축에 관한 사항

별표 2 총계 “1,560”을 “1,561”로 하고, 일반직 계 “1,531”을 “1,532”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를 “5”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1,575”를 “1,5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46”을 “1,547”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를 “5”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행정안전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5조의2제6항 관련)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

일)

총계	29
일반직 계	29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기술서기관	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전산사무관	7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전산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⑩ (생략)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및 제15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⑭ (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

급으로 하고,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혁신조직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하고,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부혁신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	<신 설> ②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삭 제 ⑧ ~ ⑩ (생 략) ⑪ ~ ⑭ (생 략)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디지털정부국장 및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3호부터 제5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⑧ ~ ⑪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⑫ ~ ⑭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⑯ ~ ⑰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디지털정부국장----- ----- ----- -----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정부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
--	---	--	---

<신 설> ② ~ ⑪ (생 략) ⑫ · ⑬ (생 략)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분권정책관 · 지역혁신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42호부터 제69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⑬ (현행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⑯ · ⑰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실장 밑에 두는 보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기관은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분권정책관 · 지역혁신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으로 하고,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분권정책관 · 지역혁신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치분권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7호부터 제33호까지, 제33호의2,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제37호의2 및 제38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혁신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68호까
---	---	--	---	--

<신 설>	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 ⑭ (생 략)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69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⑭ (현행 제2항부터 제19항까지와 같음)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으

<신 설>	로 하고,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지방재정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지방세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⑤ 지역경제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40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 ⑭ (생 략)	⑥ ~ ⑭ (현행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18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 -----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으로 하고, <u>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u>은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u>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으로 한다.	----- <u>가등급</u> -----		
<신 설>	② 「<u>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22조제1항에 따라 <u>안전정책실장</u> 밑에 두는 <u>보좌기관</u>은 <u>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u>으로 하고, <u>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u>은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u>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으로 한다.	<신 설>	<u>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⑤ <u>예방안전정책관</u>은 「<u>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22조제3항제39호부터 제5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③ <u>안전관리정책관</u>은 「<u>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③ (생 략) ④ ~ ⑦ (생 략) ⑧ 삭 제 ⑨ ~ ⑬ (생 략)	⑥·⑦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⑨ ~ ⑫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④ <u>생활안전정책관</u>은 「<u>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22조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제30호·제32호부터 제38	제19조(재난관리실) ① <u>재난관리실장</u>은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으로 하고, <u>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u>은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u>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 <u>가등급</u> ----- ----- ② 「<u>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u>

<신 설>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으로 하고,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 ⑨ (생략) ⑩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9. ~ 13. (생략) 14. (생략) ⑪ ~ ⑭ (생략)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재난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협력정책관·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⑬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⑭ -----. 1. ~ 7. (현행과 같음) 8. ~ 11. (현행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2. (현행 제14호와 같음) ⑮ ~ ⑱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신 설>	④ 재난대응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18호·제19호·제2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가등급-----
<신 설>	⑤ 재난복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34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4까지,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및 그 밖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으로 하고, 재난협

② ~ ⑧ (생략)	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8조(대통령기록관) ① ~ ④ (생략)	④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삭제>
1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 관리 지원·컨설팅	<삭제>
13. 대통령상징물·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삭제>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 ② (생략)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 인·문서의 관리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 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2. 교육훈련계획 총괄·조정
3. 예산·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3. 교육과정·교육훈련기법 등 연구·개발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

4.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립 및 운영
5.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교육과정 운영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6. 교육시상금 운영계획 수립· 관리	6. 서무·보안·비상계획 수립 및 관인·문서 관리
7.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 리	7. 소속 공무원 임용·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 및 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 영에 관한 사항	8. 예산·회계·결산 및 재산· 물품관리
9.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총괄	9.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 정 및 개선	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훈련기법 연구·개발	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4. 교육생 생활지도	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 과정 운영
5. 교수요원 관리	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 찬 및 발간
	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

6.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기본 · 전문과정 설계 및 운영	리	보조자료 및 실습기자재의 운 영 · 관리	9. 재난안전 · 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 영
7.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총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수 요조사	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 생 평가	1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실적 및 통계관리	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 립 및 운영
8.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시행	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 육과정 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과정 및 현장학습 체험의 운 영	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 · 실 습기자재 관리	1.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훈련기법 연구 · 개발	
10.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과정별 교재편찬 및 발간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 육과정 운영	2.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1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시행	
1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을 위한 외부강사 · 지도교수 의 선정 · 관리	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 획 수립 및 평가	4.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과정 및 현장학습 체험의 운영	
1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 계 및 운영계획 수립	5.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과정별 교재편찬 및 발간	
1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과정별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	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 영	6.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 무	
1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생의 학적 및 성적관리	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7.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을 위한 외부강사 · 지도교 수의 선정 · 관리	
16.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 재 편찬 및 발간	8.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 육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 사 관리		
	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 지도		

[illegible]

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
2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
원 중 40명(3급 또는 4급 1명, 4
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
9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
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
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
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 1명)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

----- 7퍼센트를 넘지 않는 -----

③ -----

----- 7퍼센트를 넘
지 않는 -----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
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
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
다.

⑤ (생략)

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행정
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
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
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고,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제55조의2(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

④ -----

----- 7퍼센트를 넘지 않는 -----

⑤ (현행과 같음)

⑥ -----

----- 7퍼센트를 넘지 않는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

<u>추진단) ① (생 략)</u> <u>②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총괄기획과·시스템개발과 및 인프라구축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u> <u>2.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u> <u>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u>	<u>보화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u> <u>② 차세대지방재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총괄기획과·재정정보화사업과·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지방세정보화사업과 및 인프라구축과를 두되, 총괄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및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 및 인프라구축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u> <u>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u> <u>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u> <u>3. ---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u>		<u>4.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5.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u> <u><신 설></u> <u>6. (생 략)</u> <u><신 설></u>	<u><삭 제></u> <u>5.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u> <u>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과세자료시스템 운영·관리</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u>④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u> <u>2.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u> <u>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온라인 대금 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u> <u>4.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 총괄 관리</u> <u>5. 지방재정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시행</u>
---	---	--	---	---

<신 설> ④ <u>시스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5. (생 략) 6. <u>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u> <신 설> ⑤ <u>인프라구축과장은 다음 사항</u>	⑤ <u>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u> 2. <u>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u> 3. <u>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u> 4. <u>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u> 5. <u>지방보조금포털 구축에 관한 사항</u> ⑥ <u>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6. <u>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u> 7. <u>지방세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 · 시행</u> ⑦ -----	을 분장한다. 1. 차세대 <u>지방세정보시스템</u> 관련 인프라 설계 및 구축 2. 차세대 <u>지방세정보시스템</u>의 통합운영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3. <u>지방세</u> 관련 빅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 시행 4. <u>지방세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 · 시행</u> 5. 차세대 <u>지방세정보시스템</u>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신 설> ⑥ (생 략)	-----. 1. 차세대 <u>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u> 관련 인프라 설계 및 구축 2. 차세대 <u>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u>의 통합운영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3. <u>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u>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 시행 <삭 제> 5. 차세대 <u>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u>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 차세대 <u>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u>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 시행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	--	--

신·구정원대비표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60</u>	• <u>1,561</u>	+1
일반직 계	• • • <u>1,531</u>	• • • <u>1,532</u>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방재안전 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 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 사무관	• • <u>4</u>	• • <u>5</u>	+1
•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75</u>	• <u>1,576</u>	+1
일반직 계	• • <u>1,546</u>	• • <u>1,547</u>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방재안전 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 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 사무관	• • <u>4</u>	• • <u>5</u>	+1
•	•	•	
•	•	•	